

제22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11. 2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024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20. 11. 13(금)

라. 회부일자 : 2020. 11. 17(화)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기금)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예수하는 등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안 제1조)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 구분, 존속기한 및 각 계정의 재원과 용도(안 제2조~제5조)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 및 운용(안 제6조, 안 제8조~제9조)

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마. 통합계정 예탁 및 용자(안 제10조~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나. 예산 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0. 10. 16. ~ 11. 5.(20일 이상, 별도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¹⁾」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2020. 11. 13.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음.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하고,
- 안 제2조 ~ 제5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 구분, 존속기한 및 각 계정의 재원과 용도

1)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049호, 2019.10.10. 제정

◦ 통합계정(예수·예탁 활용), 재정안정화계정(전출 활용) 구분

구분	재원	용도
통 계 합 정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자금 용자
재 정 안 정 화 계 정	1.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20%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 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총 사업비 중 구의 재원으로 50억 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사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안 제6조, 안 제8조 ~ 제9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 및 운용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유사중복 위원회가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0조 ~ 제16조 통합계정 예탁·예수 및 용자 근거 마련
 - 예탁기간은 1년 이상 및 이자율에 관한 사항
 - 통합기금의 용자기간 설정 및 용자금 원금 상환에 관한 사항

◦ 예수·예탁 근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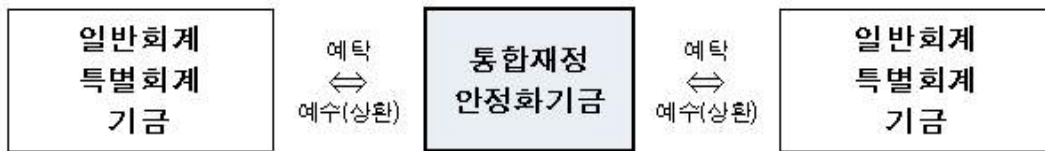
○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기금)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예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 신설(「지방재정법」 제9조의2)

* 재원을 타 회계 또는 기금에 일정기간 동안 용자(약정 기간 종료 후 회수)

**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된 재원을 일정기간 동안 활용·보관(약정 기간 종료 후 상환)

○ 예탁·예수는 (신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가능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하여 관련 내역을 체계적으로 **조망·관리**

※ 회계·기금에서 일반회계 등으로 예탁한 금액은 추후 상환이 예정되어, 최종적으로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므로 해당 특별회계·기금 목적에 배치되지 않음



- 안 부칙에서는 기존 재정안정화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 기존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조성된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승계

○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른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고, 통합 계정의 재원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과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이며, 용도는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임.

○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은 결산 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분의 10% 이상,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이며, 용도는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및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임.

○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재정의 비효율을 개선하여, 회계 상호 간 또는 회계와 기금 간의 여유 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게 돼 금천구의 탄력적인 재정 운용이 예상되며, 「지방재정법」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근거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비용추계서 1부.
3. 의견제시 사례(의견20-0158) 1부. 끝.

[참고사항]

1.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현황

-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2019년)
- (조성규모) 17,099,329천원(2020.10.01.기준)
- (향후계획) (신설)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현행)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이체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신설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정 현황

- 총 66개 지자체 (광역 4개 / 기초 62개)
 - 서울시 : 2개구 설치(관악구, 동대문구)
 -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광명시 김포시, 이천시, 부산광역시 북구 등

「지방재정법」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390호, 2020. 6. 9., 일부개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88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9.]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4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자금 용자
-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결산 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총 사업비 중 구의 재원으로 5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 : 5년 (기금존속기한)
- 결산확정에 의해 세입추계가 가능하므로 최근 3년 결산 기준으로 추계하고 2021년도 결산 시 정확한 결산금액 반영
- 통합계정은 추후 설치예정이며 재정안정화계정 설치·운영예정
 ※ 세출 발생요건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세출은 전액 예치금으로 전제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구분	일반회계 전입금	1,893	-	-	-	-	
	소계(a)	1,893	-	-	-	-	
세출	예치금	1,893	-	-	-	-	
	소계(b)	1,893	-	-	-	-	
□총 비용(a-b)		-	-	-	-	-	-

다. 재원조달 방안 : 전액 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계
구비	1,893	-	-	-	-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예산과 오경민
연락처	2627 - 1094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옥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설치하게 될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등 관련)**

[의견20-0158, 2020. 7. 21., 충청북도 옥천군]

【질의요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옥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설치하게 될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렇게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 간 통합·운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한 자문기관의 명칭·심의사항·구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명시적인 법령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그 설치·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으므로(각주: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참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자문기관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문기관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0. 2. 1. 회신 09-0395 해석례, 법제처 2018. 5. 18. 의견제시 18-0095 및 2018. 5. 4. 의견제시 18-0091 등 참조)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항),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면서(제9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10항), 달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다른 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옥천군에 설치된 ‘옥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설치·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문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본문),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제1항)과 회의 개최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의록 작성 의무(제2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옥천군에서 설치하려는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재정심의위원회”라 함)도 지방기금법 등에 따라 설치·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문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통합재정심의위원회의 통합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방기금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통합재정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는 기금별로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간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8. 5. 4. 의견제시 18-0091 및 2015. 8. 20. 의견제시 15-0207 등 참조)

그렇다면 옥천군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재정심의위원회는 각각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운영되어야 할 자문기관으로서 지방기금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문기관 간 통합·운영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바, 개별기금의 관리·운용 등을 위해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아닌 옥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재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려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해야 할 자문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기금법령 등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거나 통합재정심의위원회를 다른 유형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등】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